

이번 손해사정사례는 정치·사회적 불안과 관련된 인위적 보험사고의 하나인 소요·노동쟁의 사고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협회가 소요·노동쟁의 사고의 보상을 요구받은 첫번째 사고는 1980년 광주에서 발생한 민간소요(최근 정부에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함)의 전이라 할 수 있다. 당시 광주는 경찰행 정력이 마비되고 시위로 인한 화재로 많은 건물들이 피해를 보았다. 우리 협회의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은 소요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소요·노동쟁의 담보특약(이하 특약으로 정함)에 아무도 가입하지 않아 보상하여 줄 방법이 없었다. 당시만 하더라

도 이 특약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았고 피보험자들은 소요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협회는 1980년 8월에 사원회사업무부장회의의 의결을 거쳐 손해보험의 인식 제고와 보험 계약자들을 위로하는 취지에서 보험가입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위로금은 보험금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지만 다수의 계약자에게 손해의 일부나마 보상한 것으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하겠다. 당시의 위로금은 15개 건물에 대하여 6천5백만원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재야단체와 학생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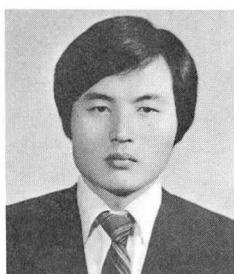
시위가 점차 조직적이며 과격해지고 이에 대처하는 경찰의 저지양성도 더욱 강경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위사고시 국민의 재산훼손도 증가하였다.

협회가 소요사고에 대해 처음으로 보상한 것은 1987년 4월 서울의 S대에서 발생한 학생 시위 사고였다. 학생들은 학원 민주화, 제적생 복교 등의 요구를 하면서 며칠간 학교 운동장과 건물들을 돌면서 농성을 벌이다가 급기야 본관 건물을 점거하고 건물 일부의 내장재와 유리창 등을 파손시켰다.

피보험자인 S대 학은 학생들의 소요사고가 자주 일어나자 1986년 7월 계약시부터 본관 건물과 학생회관 건물에 대하여 이 특약을 첨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

### 손해보상 사례

## 소요·노동쟁의에 의한 보상사례



강 병 문

〈본협회 업무부 대리〉



으며, 협회는 실제 수리비 2백44만6천원에서 피보험자자기부담액 10만원을 공제한 보험금 2백34만6천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에도 S대를 비롯한 지방의 C대, K대 등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이 특약이 판매되어 보상이 이루어졌다.

1987년 들어 재야단체와 시민·학생들이 직선제 개헌, 최루탄 추방, 민주인사석방 등을 요구하며 국가건물과 미국문화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이 점거되고 화염병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태가 빈번하자 경찰관서에서도 1987년부터 화재보험계약체결시 이 특약을 첨부해 가입하였다. 1987년 6월 18일과 26일에 최루탄추방 월기대회를 개최하려던 시민·학생들이 이를 무산시키려는 경찰에 맞서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인근 경찰관서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9백3만4천원의 손해를 입어 보험금 8백83만4천을 지급하였다.

서울에서 각종 시위의 메카로 이름난 명동 일대와 대학주변의 빌딩들은 시위 군중과 진압경찰 사이의 잦은 충돌로 인하여 소유 건물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자들은 소요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을 찾게 되고 이 특약에 가입하여 명동 및 학교 부근 몇몇의 건물이 보험의 혜택을 받았다.

1987년에는 민주화 열기가 확산되면서 각 기업의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지고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는 노동조합의 설립 러시를 이루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임금 인상을 비롯한 기업 내부에 팽배한 비민주적 제약요건의 철폐 등 요구 조건도 다양하여 노동조합에 따라 적게는 10여 가지에서 많게는 수십 가지에 이르렀다.

노동쟁의가 예견되는 몇몇 대기업에서는 화재보험 계약체결시 이 특약을 첨부하거나 기존의 화재보험계약에 이 특약의 추가를 요청하였다.

우리 협회의 계약자 중 1987년 노동사고와 관련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업체는 2개 업체이며 보험금은 8천7백만원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소요·노동쟁의 사고를 처리하면서 느낀 사고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본다.

첫째, 소요와 노동쟁의 사고는 사람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발생하고 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계약자들이 선택하는 보험으로 위험의 역선택의 가능성이 농후한 특약이다. 물론 화재사고에 있어 방화나 도난 사고 등 인위적으로 발생한 사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고들은 극히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소요나 노동쟁의 사고는 대부분 사고 발생 시까지 정치, 사회적으로 사고의 개연성이 충분히 성숙될 여건을 갖추고 있다.

수십 동의 건물 중 사고 위험이 높은 본관과 학생회관 건물만이 특약을 첨부하는 학교, 시위가 잦은 지역의 건물과 노동쟁의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가 어수선할 때 계약 체결하는 계약자 등은 경계하여야 할 위험의 역선택의 표본이라 하겠다. 따라서 계약자가 이 특약의 첨부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인수를 제한하거나 첫 회 계약체결 이후 일정기간 보상을 유보하는 제한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 특약에 의한 사고는 고의성이 게재되었으나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짧은 시간내에 다수의

인원이 저지르는 사고로서 직접 가해자의 확인과 증명이 곤란하여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전받는다 하더라도 이의 행사는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소요와 노동쟁의를 담보하는 특약의 종류와 폭동과 소요에 대한 개념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화재보험에 있어서 국문약관으로는 ① 소요·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담보특약(이 특약은 소요·노동쟁의와 항공기·차량 위험을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고 자기부담액으로 10만원이 있음)

② 확장위험부담특약이 있고,

영문약관으로는 ①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 (S.R.C.C라 칭함) ② Extended Coverage Endorsement (S.R.) [E.C.E, (S.R.)이라 칭함] 가 있다.

국문약관의 소요특약과 영문약관의 S.R.C.C는 소요와 노동쟁의만을 담보하는 특약인 반면 국문약관의 확장특약과 영문약관의 E.C.E(S.R)는 풍재, 폭발, 소요 등을 포괄적으로 확장 담보하는 특약이다.

그런데 국문약관에서는 “소요라 함은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한다”고 정의하여 폭동은 담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동과 소요의 한계가 애매하고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 이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영문약관에 폭동(Riot)과 민간 소요(Civil Commotion)를 담보하기 때문에 국문약관과 같은 문제점은 없다. ●●●